

1. 개정이유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신설 공관)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의 열악한 업무 및 생활 환경을 감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재외공무원수당 지급 규칙」 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생계비지수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달러화 지급공관 ‘사’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ECA 험지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가’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교부령 제 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프리카의 가 지역란 중 “카메룬”을 “카메룬, 시에라리온”으로 한다.

별표 3의 사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쿠바”를 “쿠바, 시에라리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시에라리온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현행		개정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시에라리온
아지역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차지역	